

언론에 의한 피해와 반론권 제도

이 용 길*

< 목 차 >

- I. 서론
- II. 언론 피해의 유형
- III.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제도로서의 반론권
- IV. 외국의 반론권과 입법례
- V. 결론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언론의 힘이 막강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 때는 우리나라의 언론을 두고 제도언론이라는 별명을 붙였었다. 언론이 일정한 정치제도의 틀 속에 묶여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심한 간섭과 조작으로, 언론은 거의 획일화하여 다양성을 찾아 보기 어려웠고 특성이 없는 보도에 식상한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외면하기까지 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공공의 문제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평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론의 자유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언론은 어떠한가. 가히 언론 천국이라고 할만큼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명의식과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언론의 자유는 자칫 방종으로 흐르거나 횡포로 변하기 쉽다는데 있다. 언론 보도는 정확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

* 제주전문대학 행정학과 교수

해 언론은 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를 감시, 비판하여야 한다. 어떠한 일 있더라도 이러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 보도와 공정한 여론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 언론의 특성상 정확성은 신속성에 의해 가리워진다. 기사의 작성이나 편집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돼 객관성을 상실한다. 양쪽 당사자가 있는데도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전달함으로써 균형성을 잃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업성·선정성에 호소하거나 광고주와의 이해(利害)관계에 따라 유착해 버릴 위험성도 있다 (양삼승, 1995: 7~8).

이 중에서도 특히 폭로 위주, 흥미 위주의 보도 태도가 문제가 된다. 선동·선정적인 무절제한 폭로 기사, 허위·과장 보도 등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언론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론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한 두 차례 항의를 하는 정도로 체념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해 버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막강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투쟁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 구제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도 기인한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익보호가 대두하게 된다. 더구나 명예는 인격권으로서 인간의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우리 한국인은 예로부터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는 명예존중 사상을 지녀 왔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1조).

본 연구에서는 언론 침해에 대한 반론권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명예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이는 곧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가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란 언론 스스로의 자질 향상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야만 「참된 언론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언론 자유는 언론 스스로가 쟁취하고 수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여(이용길, 1982:2)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위의 목적에서 밝혔듯이 언론 피해에 따른 명예회복과 구제제도로서의

반론권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발전에도 이바지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헌법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과 민법·형법 그리고 우리 나라 특유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중재제도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언론 피해에 대한 반론권에 국한하게 된다.

이 논문은 특별한 분석 틀이나 모델의 설정 없이, 관련 법률과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먼저 언론 피해의 유형과 반론권의 본질을 살펴 본 후, 우리 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외국 반론권의 입법례를 검토한 다음, 결론으로 언론 자유와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II. 언론 피해의 유형

언론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언론이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언론의 인권침해 유형은 일반적으로 명예, 신용의 훼손과 사생활, 초상권, 성명권의 침해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최창섭, 1997 : 14~17).

1. 명예훼손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예훼손이다. 여기에서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언론 보도가 개인(단체)의 사회적 지위·평가·가치를 저해시키는 경우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정보의 허위나 현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오보를 냄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신용훼손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 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의해 신용이 훼손됐다고 하

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명예훼손의 경제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생활 침해

사생활의 비밀 즉,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right to let alone)’로서, 이를 적극적인 권리 개념으로 해석하면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언론이 사생활을 공표하여 개인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왜곡 보도, 사생활 침입 등은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초상권 침해

초상권이라 함은 자기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즉, 본인의 동의가 없는 사진, 그림, 스케치 등이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이다. 언론 매체 중에서도 특히 TV의 경우가 초상권 침해의 위험성이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명예훼손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현대에 이르면서는 연예인, 체육인 등 인기인을 이용한 광고가 널리 행해지고 있고, 그 효과 또한 크게 인정되어 감에 따라 초상권에도 재산적 가치가 부여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초상권의 재산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5. 성명권

성명권은 사람이 자기의 성명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특정인의 성명을 도용(濫用)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꾀하는 것은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언론 보도의 경우, 타인의 성명 또는 성명과 유사한 호칭이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유발한다면 위법성을 갖게 되는 수가 있다. 성명권도 초상권처럼 별도의 보호 규정은 없으나, 성명권이 불법행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97년 한 해 동안의 언론침해 유형을 보면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내용 가운데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가장 많은 것(95.1%)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표 1> 언론의 인권침해 유형

침해 유형	건 수	백분율 (%)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466	95.1
신용(경제) 침해	17	3.5
기타	7	1.4
계	490	100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1997), 「바른 언론」(제114호)에서 재인용.

Ⅲ.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제도로서의 반론권

1. 반론권의 본질

반론권(right of reply)이란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을 했을 경우, 그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반론권은 언론에 의해 비판, 비난 등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공격을 받은 자가 가해(加害) 미디어에 대해 자기의 반론을 무료로 게재 또는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원우현, 1994 : 576~577).

즉, 반론권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의 내용이 공표된 미디어를 통해 해명·반박·정정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보도 중의 명예훼손적인 내용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하는 좁은 의미의 정정권(訂正權)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작성한 반박문을 해당 미디어에 대하여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반박권(反駁權)으로서, 이 경우에는 보도 내용의 잘못된 것을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실에 대한 논박은 물론 비판 공격이나 주장 등에 관한 반론을 무료로 실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반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의 인격권(헌법 제10조),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반론권은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제4의 권부라고 지칭되는 막강의 언론 기관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수용자인 국민의 반박기회 보장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도 그 근거가 된다. 보다 직접적인 근거는 언론의 책임과 피해의 배상을 명시

한 헌법 제21조 4항의 규정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반론권이 인정되는 근거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헌재 판례집 제3권, 1991 : 518).

①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 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 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 잘 부합할 수 있다.

② 독자로서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 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반론권의 보장은 언론 보도가 갖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 비추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 또한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헌재 판례집 제3권, 1991 : 532~535).

“반론권제도는 전과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 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제적인 권리 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언론 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즉시 반박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론은 그것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 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데에도 반(反)하는 것이 된다.”

한편 우리의 반론권제도는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이라는 제도적 성격과 더불어, 다른 의견의 제시를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자 하는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우리 나라의 반론권 제도

1789년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국가의 검열제도가 폐지되자, 언론자유와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의 일반 구제절차만으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프랑스 의회는 1822년 3월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

유자와 편집자는 언론 피해자로부터 반론이 있을 때에는 반론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만일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호에 무료로 그 반론을 게재할 것'을 규정(출판법) 함으로써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하였다.

1831년에는 독일의 바덴주가 반론권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였고, 그 후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반론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보처, 1996 : 67~68).

우리 나라는 1980년 12월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을 통해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우리 국민은 반론권이라는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은 반론권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지탄을 받게 돼, 1987년의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하기에 이른다.

그 후 반론권은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동시에, 새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과 방송법 등에 각각 규정됨으로써 계속 시행하게 되었다. 언론 피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의 반론권은 정간법상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밖에 민법과 형법상의 절차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가. 반론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 내지는 반론문을 무료로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정기간행물에 자기와 관련한 보도가 있고, 그 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때에 그 보도 내용에 대하여 반박이나 반론, 해명 등의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반론보도 청구권이다 (공보처, 1996: 117~120).

이 권리는 헌법 제 21조 4항을 토대로 하여 인정되는 공법적 권리로서, 언론 기관의 취재 편집 보도 등의 언론 자유에 대응하여, 수용자인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내지는 자기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보도에 대한 응답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반론보도 청구권은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론권을 도입해 법제화한 것으로서, 정간법 제 16조~21조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으며, 그와 같은 보도를 하게 된 데에 따른 발행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보도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도 어느 한 면만을 보도하거나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보도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언론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나 힘을 갖지 않은 일반 시민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

라서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게 된다. 이러한 난관을 해소하고 언론 침해에 따른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동안 피해자와 언론기관 사이의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당사자의 권익 회복과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중재 제도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82.5%가 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표 2>.

<표 2>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필요성 여부	피해자(응답자)	백분율(%)
필요하다	123	82.5
필요치 않다	22	14.8
무응답	4	2.7
계	149	100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1997년도 세미나 종합 보고서.

피해자의 반론보도 청구는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도 되고, 아니면 해당 언론사에 먼저 청구할 수도 있다. 즉,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그 보도가 있을 후 6개월까지는 청구가 가능하다(정간법 제16조).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 청구를 할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협의가 결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로 중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언론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일반 단체도 권리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과 자치단체의 장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론보도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반론보도 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청구 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재의 법적 성격은 분쟁 당사자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화해를 권유하는 일종의 조정이다. 중재 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절차는 종료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공평한 이익과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의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중재 결정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쳤지만 불성립되거나, 중재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 신청인은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법원에의 반론보도청구신청은 사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중재전치주의(仲裁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강현중, 1996 : 12). 이러한 중재전치주의는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구제의 기회를 마련하고, 언론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살려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반성과 재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반론보도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 상의 가처분 절차에 의한다. 반론보도는 원래의 보도가 있을 때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에 의한 피해자는 위의 반론보도 청구 이외에,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권은 반론보도 청구권과 매우 비슷한 용어로서 이용 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둘 다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자가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반론보도 청구권은 헌법과 언론관계법률 즉, 정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에, 정정보도 청구권은 헌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다르다 <표 3>.

<표 3>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

구 분	내 용
반론보도청구	특정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그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
정정보도청구	언론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그 잘못을 언론사로 하여금 시인하고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자료 : 공보처, 언론피해 구제방법과 절차 (1996).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하여 불법행위 책임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 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론에 의해 당한 피해 역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위법성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민법 제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틀린 보도를 정정하는 정정보도 청구권은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권은 반론보도 청구권과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즉,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바로 법원에 대해 행사할 수도 있게끔, 임의적 중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상의 정정보도 청구를 임의적 중재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현중, 1996: 13). 정정보도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청구권자는 반드시 언론보도가 「실제와 다름」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짐으로써 어려움을 안게 된다. 반면에 언론기관은 패소할 경우, 언론사의 이름으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게 됨으로써 언론보도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가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어느쪽이든지 원하는 경우에는 손쉬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우선 거치게 함으로써 서로의 부담과 낭비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어쨌든 정정보도 청구권은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명예회복 청구권으로서, 공법적 권리인 반론보도 청구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다.

다. 추후보도 청구권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자로 또는 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자신의 결백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고소 고발 입건 구속 재판 등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 경우, 그 관련자는 이로 인하여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자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때' 에는 이에 대한 후속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간법 제20조).

종전에는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 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소기각이나 면소판결 등의 경우까지 해당하여 그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언론사가 현저히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정간법은 '무죄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형

태의 경우' 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공보처, 1996: 130~131). 여기에서 무죄판결과 동등한 경우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또는 죄 안됨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게 돼 있다.

추후보도 청구권은 반론보도 청구권과 그 성질이 동일한 까닭에 이에 관한 절차는 반론보도 청구권의 그것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될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자신의 결백함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이를 내용으로 하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민·형법상의 구제제도

부정확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간법상의 반론권 이외에 민·형법상의 피해구제방법이 있다.

1) 민법상의 손해배상

민법상의 명예회복 방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라 함은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곽윤직, 1981: 568).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가해자에게 금전배상의 의무를 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금전배상주의와 원상회복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즉, 민법 764조는 손해배상방법의 특칙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명예훼손기사의 취소 광고' '사죄 광고' '정정보도' 등의 방법으로 그 명예나 신용을 회복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상의 구제제도에 관해서는 위의 「정정보도 청구권」에서도 상세히 논한 바 있다.

2) 형법상의 제재(制裁)

기사의 작성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어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경우의 처벌 조항으로는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309

조), 신용훼손죄 (313조), 피의사실 공표죄 (126조) 등이 있다.

가) 명예훼손죄

명예의 보호는 개인의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생명·신체·자유 및 재산 등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명예·신용도 보장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를 훼손한다’라 함은 사람이 사회로부터 받는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현실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일종의 위험범으로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정영석, 1982: 272~273).

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방송,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제309조).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비방의 목적 즉,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단순히 명예를 훼손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만 있고,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설령 신문 기타의 출판물 등을 이용하더라도 이 때는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로 되는 것이다. 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특히 언론과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한편 언론·출판에 있어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엄기형, 1982: 425~426).

첫째, 특권(privilege)이다. 국회내의 의원발언, 사법절차에 있어 판사 검사 변호사 소송당사자의 변론 등은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도 당연히 면책된다.

둘째,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는 그것이 상대방을 비록 모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악의가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일반국민의 공직 입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이와 관련되는 보도 등은 개인의 명예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욱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면책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논평을 빙자하여 타인을 비난 또는 모욕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아니한다.

다)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다(형법 제 313조).

여기에서의 보호객체는 사람의 신용이다.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 원래 신용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점에서 명예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의 인격 일반에 대한 평가이고, 「신용」은 특히 경제적 면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 형법은 신용훼손죄를 명예훼손죄와 구별하여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경제면에 대한 평가로서의 신용을 독립한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라)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으로써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이다(형법 제126조).

이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정신에 따라 피의자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증거인멸 등으로 인한 범죄수사의 장애요인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1인, 예컨대 1인의 신문기자에게 피의사실을 고지(告知)하는 경우에도 다수인에게 알리는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역시 공표가 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형사상의 규제는 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에 근본목적이 있지, 인권의 회복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피해자의 구제 수단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라 하겠다(양삼승, 1995: 12).

IV. 외국의 반론권과 입법례

1. 프랑스

프랑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법을 통해 반론권을 보장한 나라이다.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이후 수없이 많이 생겨난 신문들의 무절제한 보도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 언론자유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법적 방편의 하

나로 반론권을 모색하게 되었다. 프랑스가 이처럼 언론의 사회적 책임론을 도입하고 언론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언론이 너무나 자유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보려고 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박윤희, 1995.봄: 47).

이러한 노력은 그로부터 30여년 후인 1822년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돼, 세계 최초의 반론권법을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 영미법계에는 없는 이와 같은 규정을 하게 된 것은 언론의 남용으로부터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이 법은 「모든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보도에서 지명되거나 지시된 자는 누구든지 해당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소유자나 편집자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론을 요청받은 일간 신문은 3일 이내에, 기타 정기 간행물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다음 호에 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이 법은 최근 1987년까지 약 20번에 걸친 수정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반론권 규정은 1881년의 출판법 제13조로서 그 동안 약간의 세부적인 사항에만 변화가 있었을 뿐 법조문의 주요 골격은 170여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 출판법 제13조는 「모든 신문과 정기 간행물의 보도에서 지명(指名)되고 지시(指示)된 모든 사람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명된 자란 성명이 명기된 자연인을 비롯하여 보도에서 상호나 명칭이 밝혀진 단체를 말하며, 지시된 자는 성명이나 상호·명칭이 비록 명기되지 않는 아니하였어도 표제나 본문 또는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 독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보도를 읽고 그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 전체가 명기되지 아니 하더라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에 대한 반론권은 오랫동안 인정되지 않았으나, 방송에서의 인격권 침해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프랑스 의회는 1972년 방송협회법을 개정하여 반론권을 인정하였다. 이 개정법 제8조는 당초 「방송에 의하여 명예나 명성이 침해된 자연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비롯한 방송과 영화, 뉴 미디어 등 비디오 매체에 의하여 명예와 명성이 침해된 모든 사람」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윤희, 1995.봄: 54~55).

2. 독일

독일은 현재 연방 차원의 통일적인 반론권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각 주(州)마다 반론권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반론권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박윤희, 1995.여름: 41).

일반적으로 볼 때 독일의 반론권은 가치판단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이나 논평 진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실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권리이다.

여기에서는 1964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의 출판법 가운데 반론권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박윤희, 1995.여름: 41).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언론보도의 사실 주장에 관련된 자연인이나 공·사법상의 법인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조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론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데, 외국인 개인과 외국관청 모두에게 인정되며 국제기구의 구성원과 그 기관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보도에 성명이 확실하게 지명 또는 거론되지 아니 하였더라도 일반 독자가 유발 기사를 읽고 그가 누구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문맥·그림 등을 통하여 특정인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인식 가능성). 유발 기사에 언급된 자는 물론이고 동명이인인 자도 반론권이 주어진다. 인쇄매체에 있어서 반론권의 행사는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한한다. 신문은 발행주기에 관계없이 여러 종류의 신문이 모두 대상이 된다. 정기 간행물은 주기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을 말한다.

독일에 있어서 반론권의 대상은 단순히 기자에 의한 취재기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실 주장이 들어있는 한 모든 종류의 언론 보도에 전부 적용된다.

반론권자가 반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 정당한 이익의 요건은 민법상의 「권리 남용금지」 규정을 반론권법에 적용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쇄매체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방송에서의 반론권 규정은 그 어느나라에서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방송에서의 반론권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모두 적용되는데, 반론권의 주체와 유발방송과의 사실성 문제, 청구방법 등은 인쇄매체에서의 반론권의 요건과 동일하다. 이 반론권은 첫째, 유발방송의 사실 주장에 국한되고 둘째, 반론 요청은 방송책임자에게 자필로 서명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셋째, 반론의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넷째, 본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러한 반론은 유발방송 후 즉시 요구되어야 하며, 반론 방송은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첨삭(添削)없이 방송되어야 한다.

3. 미국과 영국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는 반면에, 신문에서의 반론권은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반론권과는 다른, 가끔은 혼용되기도 하는 액세스권(right of access)이 인정되고 있다. 액세스권은 매스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보도매체 접근 이용권을 말한다 (한국 언론학회, 1994: 575~576). 액세스권은 언론 매체를 단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장(場)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가해자인 언론을 상대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거나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반론권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이라는 개념은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일반 대중에게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액세스권은 언론기관에 자기의 의견이나 반론을 투고하여 게재 또는 방송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 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신문·잡지 등의 편집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매스미디어의 경영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액세스권은 1967년 미국의 헌법학자이자 언론법학자인 제롬 배런(Jerome A. Barron)이 “언론 자유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매스미디어가 그 참된 소유자인 독자와 시청자에게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제기하였다. 그 후 이러한 제기는 많은 호응을 얻어 몇몇 선진국에서는 액세스권의 일부를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모든 액세스권들이 실제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의 액세스권만 보호하다가는 그 반대로 매스미디어의 언론자유가 제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매스미디어에 의견광고나 투고를 게재 또는 방송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형편이다.

주의할 것은 신문에서의 반론권이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에서 피해자가 재판을 통하지 않고 언론사를 상대로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특히 방송에서는 전파 자원의 희소성을 내세워 반론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액세스권을 인정하고 있다 (방석호, 1997.봄: 33~34).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론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방송에 의한 피해를 본 당사자는 별도의 불만처리 기구인 BCC (Broadcasting Complaints Commission)에, 신문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PCC (Press Complaints

Commission)에 각각 제소하여 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제 반론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피하고 있는 독특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PCC는 법원과 같은 엄격한 심판 기구는 아니며,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와 비슷하게 자율적 규제를 존중하는 기조위에서 피해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언론사와의 사이에서 조정을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영국의 언론피해 구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다른 특색중의 하나는 대륙법계의 반론권과는 달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언론에 의한 피해와 그에 따른 권리 구제제도로서의 반론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반론권이란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반론권은 우리나라 특유의 언론중재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행사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반론권의 행사나 언론중재활동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민주 정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인정되고 있다 (김철수, 1997 : 539). 즉,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사유(思惟)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관해서는 이의(異議)가 없다.

우리 헌법은 언론 자유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①항).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 제21조 ④항)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남용하고 침해할 자유까지는 포함될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의미의 언론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론권 제도의 강화와 언론의 자유와는 별다른 충돌이

나 갈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언론의 자유는 끊임없는 자기 노력에 의해 쟁취하고 수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신문 윤리 강령이나 방송강령에서도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를 위해 반론과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언론에 의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곽윤직 (1981), 「채권각론」, 서울 : 박영사.
- 김철수 (1997), 「헌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 엄기형 (1982), 「신문윤리론」, 서울 : 일지사.
- 정영석 (1982), 「형법각론」, 서울 : 법문사.
- 공보처 (1996), 「언론포해 구제방법과 절차」, 서울 : 공보처.
- 한국언론학회 (1994), 「언론학 원론」, 서울 : 범우사.
- 헌법재판소 (1991), 「헌재판례집」 제3권, 서울 : 헌법재판소.
- 강현중 (1996), “반론보도 청구권 및 정정보도 청구권의 법적 성격”, 「언론중재」 제16권 제3호.
- 박운희 (1995), “프랑스에 있어서의 반론권”, 「언론중재」 제15권 제1호.
- _____ (1995), “독일의 반론권”(上·下), 「언론중재」 제15권 제2호, 제3호.
- 방석호 (1997), “뉴미디어 시대의 반론권과 액세스권”, 「언론중재」 제17권 제1호.
- 양삼승 (1995), “현행법과 언론수용자 권익”, 「언론중재」 제15권 제3호.
- 원우현 (1994), “언론 법규 - 반론권과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학 원론」, 한국 언론학회.
- 이용길(1982),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 회복 방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최창섭 (1997), “언론포해 구제와 중재위원회의 역할”,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 종합보고서」.
- 바른 언론 (1998), “언론중재위 처리 건수”, 제114호.
- Barron, Jerome A. (1967), *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 Harvard Low Review.